

원고 제출 및 작성 안내

I. 원고 제출 및 게재

1. 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학술논문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이나 글은 다음 주소로 투고되어야 한다.
 - 전자우편: socialin@kangwon.ac.kr
 -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호관 227호)
3. 제출원고는 국문이나 영문으로 쓰여야 하며 아래의 원고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I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지침

1. 제출논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며, 여백은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0, 제본: 2로 한다(단위: mm).
2. 원고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이다.
3. 원고는 표지, 초록, 본문 및 각주, 참고문헌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4. 세부적인 원고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기고자의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의 말을 포함한다.
 - 2)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1., 1), (1)의 형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3)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짧게 한다. 각주는 논문단위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4)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계속해서 “참고문헌”이란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또는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 6) <영문초록>은 제목과 필자명을 포함하며, 요약문은 7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작성한다.
5. <필자의 익명성>: 심사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자의 이름을 별도의 표지에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6. <한글사용>: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속에 한자(漢字)를 부기하도록 한다.
7. <외래용어>: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8. <외국인명 및 지명>: 외국인명이나 지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외래어 표기 규정이 없는 경우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9. <영문 원고에서의 한글의 영문 표기>: 영문으로 제출되는 원고에서 한글 고유명사나 특수한 개념을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2000년 8호의 새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III. 출전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한 후 그 속에 다음의 방식

에 따라 표기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콜론을 하고 한 칸을 띄우고 숫자만 표기한다.

- 1) 저자의 이름이 한글인 경우: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며,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이상백(1949: 149)에 따르면 ...”

예 2: “...(이상백 1949: 149).”

- 2)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며,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명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1: “... Parsons(1949)”; 예2: “...(Parsons, 1949)”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이상백·김채운, 1966)”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 또는 “et al.”을 사용한다.

예: “... (문승규 외, 1967)”

- 5)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에 의한 저술일 때는 최소한의 저자표기를 사용한다.

예, “... 노동부(1992)”

- 6)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각기 다른 저자의 문헌일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하고 같은 저자의 다른 문헌일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한다.

예1: “(이상백, 1949; 이만갑, 1973)”; 예2: “...(Parsons, 1949, 1956)”

- 7)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현영석, 1988 미간행)”

2. 본문과 관련은 되지만 본문에 포함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 언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인용 시 원래의 저서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언급된 본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3. 참고문헌의 표기 순서는 **논문의 경우는 단행본의 경우는** 〈성명. 발행 연도. 『책제목』. 출판지역: 출판사.〉 순으로 하며, 〈성명. 발행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페이지.〉 순으로 한다.
4.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연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5. 각각의 문헌은 아래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저서

- (1) 저자가 1인인 경우:

김구. 1990. 『백범일지』. 서울: 황성문화원.

Albrow, Martin. 1996. *The Global Age*. Cambridge: Polity Press.

- (2)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인용하는 책 표지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 1980. 『조선시대 인물고』. 춘천: 춘천문화원.

김태호 외. 2000. 『강원도와 폐광촌』.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2) 학위논문

홍길동. 1992. “고려 후기 민란의 사회경제적 동인.”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Hong, Gil-Dong. 1995. "Social banditry in the 19th century: A case study." Ph.D. Dissertation. Chunche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 학술지, 원간지, 계간지 등에 게재된 논문.

최길은. 1996. "전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교육: 가치의 갈등구조." 『사회문화평론』 4(5): 331~61.

Ingram, Robert. 1985. "Transactional script theory applied to the pathological gambler: A case study."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1(2): 89~96.

4)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김동원. 1996. "춘천의 권력구조와 지방자치."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 『지방분권시대 춘천 읽기』.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pp. 331~61.

Scotton, James. 1997. "The new rich and the middle class in South Korea." R. Robinson and D. Goodman (eds.). *The New Rich in Asia*. London: Routledge. pp. 69~96.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김수홍. 1996. "풍물시장 사람들의 삶." 『인간, 문화, 사회』. 서울: 고려원. pp. 331~61.

5)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기사 및 칼럼.

김민지. 2004. "카지노와 폐광촌." 『중앙일보』. 4월 14일.

Juoro, Nancy. 200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The Age*. April 23. p. 25.

6) 인터넷 검색 자료일 경우 저자, 작성년도, 제목, 웹주소, 검색일자 순으로 하되, 검색일자는 괄호 안에 둔다.

Anna, Maria. 1990. "Comparison of musical instruments in Asia." <http://www.music.com/345678times/erprint.html> (검색일: 2010.02.02).

6.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V. 제출처 및 문의

1. 주소: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사회과학대학 2호관 227호)
2. 전화: 033-250-7212(사회과학연구원)
3. E-mail: socialin@kangwon.ac.kr

사회과학연구원 발행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사회과학연구』(영문명: Journal of Social Sciences, 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발행)

- ①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의 기초 이론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과학분과 및 학제적 연구 성과를 수록한 사회과학분야 종합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를 발행한다.
- ② 『사회과학연구』의 게재논문은 사회과학 분야로 하되, 정치학, 행정학, 부동산학, 신문방송학,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이상 9개 분야를 우선으로 한다.
- ③ 『사회과학연구』는 연 2회(발행일: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 ①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위원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를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간행업무를 주관하며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⑤ 편집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 ① 본 학술지의 편집 방향의 결정과 발행 관련 예산의 집행 및 정산.
- ②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의 결정 및 심사위원의 선정과 논문 게재에 관한 최종 결정.
- ③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제5조 (심사위원)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연구대상지역과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최대한 배제한다.
- ③ 심사위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이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해당 연구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편집규정)

- ① 논문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발행일 3개월 전 원고모집 공고를 실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고지한 일정 내에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 ②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③ 원고 제출 시 필자는 별도의 '원고 제출 및 작성 안내'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집필 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④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초록, 영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 ⑤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이다. 편집위원회는 규정 분량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행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심사과정)

- ①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이 학술지 편집규정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고, 적합관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도 심사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 논문을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대조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1차 심사와 재심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최종 심사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심사결과 판정)

- ① 심사의 세부 내용은 (가) 연구 목적의 적절성과 명료성 (나) 연구 방법의 적절성 (다) 내용 전개의 논리성 (라) 연구 내용의 독창성 (마)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와 유용성 (1) 주제어와 참고문헌의 정확성이며, 각 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 종합 결과를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 ③ 일반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			판정
A	A	A	게재 가	A	C	C	수정 후 재심
A	A	B	게재 가	A	C	D	수정 후 재심
A	A	C	수정 후 게재	B	C	C	수정 후 재심
A	A	D	수정 후 게재	B	C	D	수정 후 재심
A	B	B	수정 후 게재	C	C	C	수정 후 재심
A	B	C	수정 후 게재	C	C	D	수정 후 재심
A	B	D	수정 후 게재	A	D	D	게재 불가
B	B	B	수정 후 게재	B	D	D	게재 불가
B	B	C	수정 후 게재	C	D	D	게재 불가
B	B	D	수정 후 게재	D	D	D	게재 불가

제9조 (심사결과 이의제기)

- ① 심사 결과에 필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 위원회에 이의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이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심사의 절차는 처음 심사와 동일하다.

제10조 (논문 게재료 및 저작권)

- ① 투고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와 심사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게재 확정은 본 학술지의 논문 사용 및 공개 방식에 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 칙(2013년 9월 20일)

1. 이 규정은 201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8년 07월 01일

개정 2013년 09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표기) 소속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 소속 연구자 이외에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연구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연구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3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연구 결과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명시함과 더불어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출판된 타인의 저술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 ②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에 적용된 연구설계, 미공개된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의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③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일부 인용할 때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제4조 (중복 게재와 이중 출판)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때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출판될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6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 (공정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조 (비밀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필자신상과 논문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성실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11조 (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2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3조 (윤리위원회 구성과 의결)

- ① 윤리위원회는 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으며, 편집위원, 연구원 소속 연구원, 연구원 외부의 전문가 등이 윤리위 위원을 맡는다.
- ③ 윤리위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윤리위에서 제외

한다.

- ④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보고자, 피보고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과학원 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제3조 내지 제4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장은 연구원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보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제16조 (소명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보고자와 피보고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피보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피보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8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어 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원장은 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한다.
- ②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피보고자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단, 이들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5년 동안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혹은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4. 향후 5년 동안 연구원 소속 연구자 자격 제한.
 5. 기타의 제재
- ③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제2항 제2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④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보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2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년 07월 01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년 9월 20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